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2호 2025. 9. 29.(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698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99호)
-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0호)
- 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1호)
-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2호)
-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703호)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04호)

공 고

- 예천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335호)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338호)
- 예천군 예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34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8호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2.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운영주체) 특화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특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특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우수한 형질의 예천한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내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천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특화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제3조)

-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 그 밖에 예천군수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나. 특화센터 운영주체 지정 및 관리위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 특화센터의 운영주체는 군수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위탁 위탁료와 사용허가 시 사용료의 산출 방식 및 감경 기준 규정

다. 시설물의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

-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를 변경 금지 명시

라. 특화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9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경상북도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군세 감면 대상에 “자연유산”을 추가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감면 대상 중 “자연유산” 항목 추가(제4조)

나. 일몰기한 도래한 조항 일몰기한 연장(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0호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
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
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기준 규정(제2조)
 -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 10대 이상 50대 미만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1호

예천군 대한육상연맹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육상 발전과 지역의 스포츠 관계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이하 “육상교육훈련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8-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육상교육훈련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집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사용하는 육상관계인(육상선수, 육상지도자, 육상심판 등) 및 타 체육단체 등 그 외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을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거나 이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 ①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은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은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한육상연맹은 육상지도자 및 심판 양성, 육상인재 육성 등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한육상연맹이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육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시 타 종목단체 등 체육과 관련된 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방

체육회에 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③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2. 육상교육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3.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수급, 시설 유지관리의 내구성 확보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예천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이용허가 등) 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상관계인에 한하여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및 이용허가서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용허가에 관한 조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2.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

제12조(수입금의 처리) ① 군수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예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 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경우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

구분	단위	기준	이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숙소	1실	1박	50,000원	
강당	1일	09:00 ~ 18:00	300,000원	육상교육훈련 또는 숙소 이용 시 면제
	1회	4시간	200,000원	
회의실/ 세미나실	1일	09:00 ~ 18:00	150,000원	육상교육훈련 또는 숙소 이용 시 면제
	1회	4시간	100,000원	

[별표 2]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조건

1.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물 이용 전 이용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관리상 귀책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관리 상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7. 육상교육훈련센터 내부로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반입을 일절 금한다.

예 천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신청서

접 수 번 호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 년월일)	
이 용 시 설	기본시설	☐ 숙소		
	부대시설	☐ 강당 ☐ 회의실 ☐ 세미나실 ☐ 기타()		
이용기간(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이용인원		☐ 숙소 : 명 ☐ 부대시설 : 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육상교육훈련센터 시설물 이용허가를 위한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서

허가번호				
이용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이용시설	기본시설	☐ 숙소		
	부대시설	☐ 강당 ☐ 회의실 ☐ 세미나실 ☐ 기타()		
이용기간(시간)		년 월 일~(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이용인원		☐ 숙소 : 명 ☐ 부대시설 : 명		
이용료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며, 이용허가 조건은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의한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제정이유

- 육상교육훈련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육상도시 예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육상 종목을 통한 지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육상교육훈련센터 용어 정의(제3조)
- 나.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제4조)
- 다.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5조)
- 라. 육상교육훈련센터 관리위탁 규정(제6조)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근거 마련
- 마.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 규정(제10조)
- 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료 징수 규정(제11조, 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2호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성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정이유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친화적인 정책의 기반 구축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기본계획·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 다. 조사·지원·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 라. 평가에 관한 사항(제10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3호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교류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홍보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영상 제작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 또는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 ~ 제2조)

- “기념사업”이란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뜻함

나. 군수의 책무와 추진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교류사업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다.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공적에 관한 포상 규정(제5조 ~ 제7조)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위탁 규정
- 공적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 포상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04호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을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주민간”을 “지역주민 간”으로 한
다.

제3조제3항 중 “출타등”을 “출타 등”으로, “때에는읍면장”을 “때에는 읍면장”
으로, “지정 받아야”를 “지정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작성하
여읍면장”을 “작성하여 읍면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제5조 중 “수있으며”를 “수 있으며”로,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이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신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급

예천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안) 공람공고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38-2번지 일원의 풍양 한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예천 군관리계획(하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5. 9. 29. ~ 2025. 10.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안)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붙임참고

※ 붙임 결정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하천) 결정(안)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가. 방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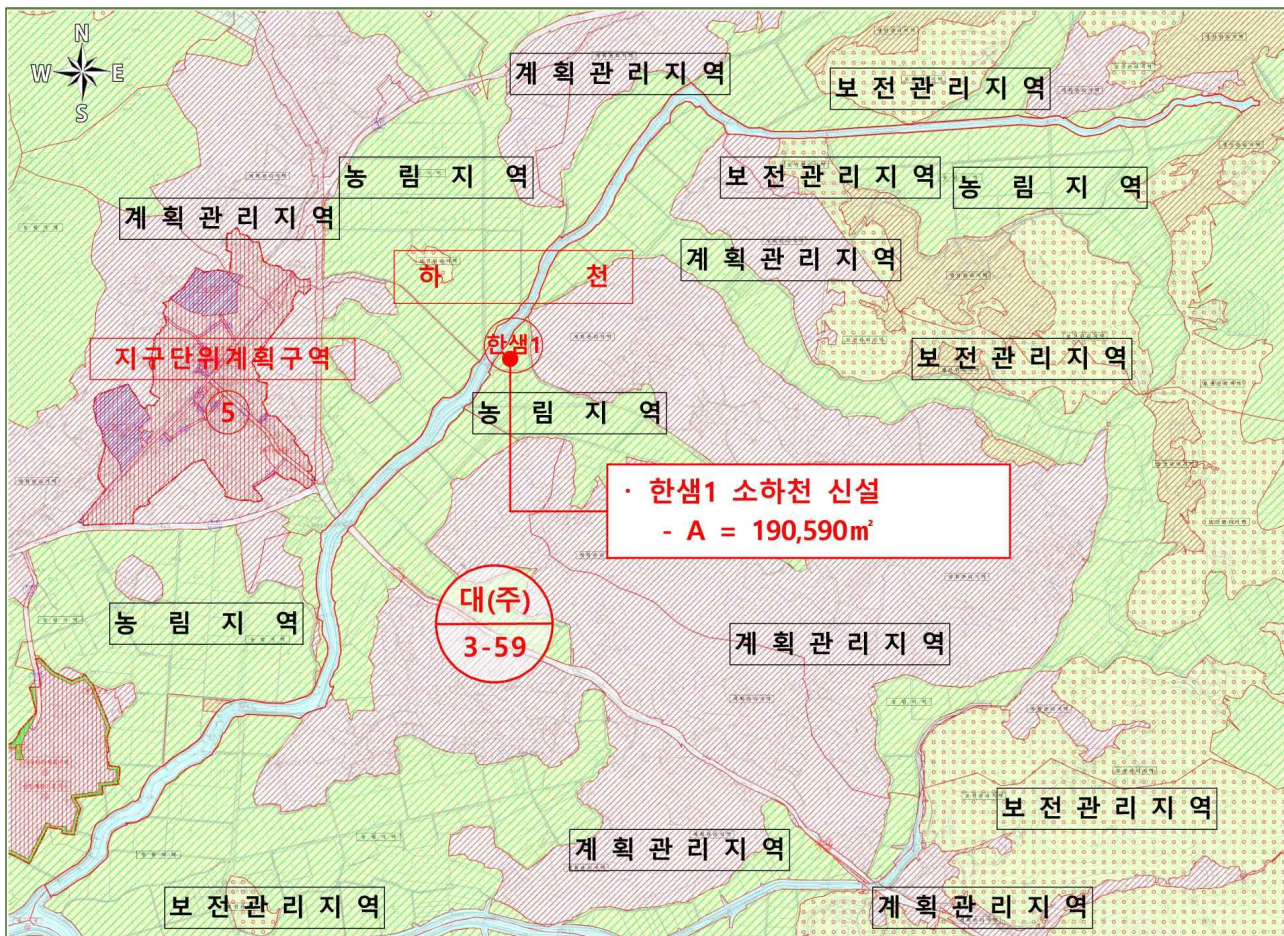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신설	한샘1	한샘천	소하천	풍양면 흔효리	풍양면 낙상리	-	5.16	13~7 3	190,590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한샘1	한샘천	· 소하천 신설 - A = 190,590㎡	· 풍양 한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소하천 신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호명읍 산합리 일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 도로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변경 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5. 9. 29. ~ 2025. 10.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불임참고

※ 불임 결정(변경)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도로 외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85	19,444	475,300.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2	6,107	131,621.2
		변경	85	19,444	476,757.2	41	5,434	83,315.3	22	7,903	261,174.0	22	6,107	132,267.9
일반 도로	계	기정	58	17,680	455,620.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4	5,937	130,604.4
		변경	58	17,680	457,077.1	26	4,381	72,767.7	18	7,362	253,058.3	14	5,937	131,251.1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기정	9	6,232	181,744.6	-	-	-	3	2,413	73,722.40	6	3,819	108,022.2
		변경	9	6,232	182,391.3	-	-	-	3	2,413	73,722.4	6	3,819	108,668.9
	중로	기정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변경	23	6,111	107,504.6	8	2,288	51,355.2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선형 변경 B = 28m, L = 1,518m A = 43,243.6 → 43,734.3㎡ (증 490.7㎡)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대로3-3호선	대로3-3호선	선형 변경 B = 28m, L = 892m A = 26,493.7 → 26,649.7㎡ (증 156.0㎡)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	선형 변경 B = 21m, L = 306m A = 6,799.9 → 7,050.8㎡ (증 250.9㎡)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선형 변경 B = 21m, L = 296m A = 6,441.5 → 7,000.8㎡ (증 559.3㎡)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 외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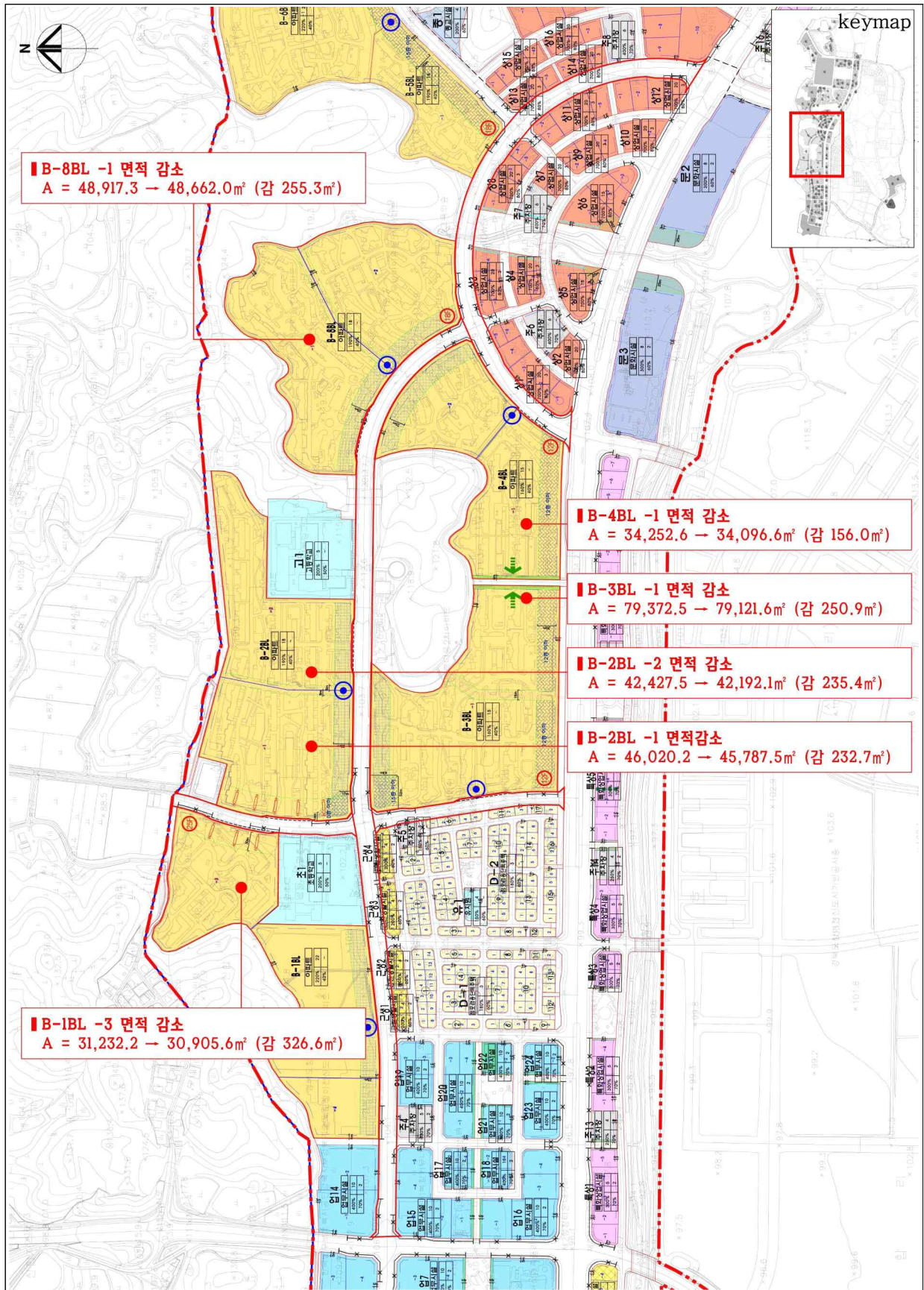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481,865.2	12필지	기정	481,865.2	
		변경	480,408.3		변경	480,408.3	
B-1	-	기정	82,137.3	1	38,905.1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변경	81,810.7	3	기정	31,232.2	
					변경	30,905.6	
				4	12,000.0		
B-2	-	기정	88,447.7	1	기정	46,020.2	
		변경	87,979.6	2	기정	42,427.5	
					변경	42,192.1	
				B-3	-	기정	
변경	79,121.6	변경	79,121.6				
B-4	-	기정	59,903.4	1	기정	34,252.6	
		변경	59,747.4		변경	34,096.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B-6	-	55,901.2		1	55,901.2		
B-8	-	기정	89,567.6	1	기정	48,917.3	
		변경	89,312.3		변경	48,662.0	
				2	40,650.3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기 정	변 경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4장 상업업무용지 제4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 ⑦ (생 략) ⑧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 (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 (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4장 상업업무용지 제4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경관녹지와 접한 블록은 1.2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제Ⅳ편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제4조 (가로형 간판) ① 설치위치 1. 일반상업지역은 3층 이하, 기타지역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2. 3. (생 략) ② 3. (생 략)	제Ⅳ편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제4조 (가로형 간판) ① 설치위치 1. 일반상업지역은 5층 이하, 기타지역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예천군 공고 제2025-1343호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해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5. 9. 29.

예 천 군



1. 목 적

- 예천읍 대심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5. 10. 14.(화) 15:00
- 장 소: 대심3리 경로당 2층 회의실(예천군 예천읍 대심3길 18-6)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위 치: 예천읍 대심리 427번지 일원, 143,000㎡
- 사업유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기 간: 2026년~2030년(5년)
- 내 용: 다누림센터 조성, 생활마당 조성사업, 생활거점 연결 보행환경 개선,
대심 집수리 지원사업, 대심 안심골목길 정비사업 등

4. 주민의견 제출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이후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
- 이메일: junhee7532@korea.kr / 팩스: 054-650-6349
- 제출기한: 2025. 10. 17.(금) 18:00(도착분에 한함)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54-650-6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시재생사업(대심리) 활성화계획(안)』
의 견 제 출 서

의 견 제출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제 출 의 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